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20016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200160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5189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A

변론 종결 2022. 11. 24.

판결 선고 2023. 1.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7가합51893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8. 12.경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473,846,3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846,3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한 나머지 사해행위취소 청구, 원상회복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1,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주위적으로, 피고는 C[주소: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게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이 1,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와 피고 참가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1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1,946,669,1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주위적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이 1,832,882,9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3,786,1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32,882,99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2016. 2.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의 취소 청구, 주위적으로 그 원상회복 청구, 예비적으로 그 가액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중위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1) 이 사건 제2, 3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도 청구를 일부 감축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피고와 피고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을 1,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부터 제23면 제8행까지 각 "B"를 각 "피고 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0 내지 12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년 10월경을 기준으로 체납액은 합계 4,321,669,120원에 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2019년 10월경을 기준으로 체납액은 합계 4,321,669,120원에 달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첫째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표의 순번 1 내지 8 기재 조세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참가인의 부동산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V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1. 9.을 기준으로 피고 참가인의 체납액은 위 표의 순번 9, 10 기재 조세채권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액의 합계인 4,971,150,550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9	강동	양도소득세	2016. 11. 19.	1,971,761,020	2,244,688,300	2012
10	용인	양도소득세	2017. 10. 31.	2,239,603,840	2,726,462,250	2013
합계	4,211,364,860	4,971,150,550				

】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 참가인은 2016. 3. 31. 이 사건 제2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제2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피고 참가인의 위임을 받아 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 참가인은 2016.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하였고,2) 피고는 2016. 8. 12. 피고 참가인의 위임을 받아 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6. 8. 16. C에게 도달하였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의 "지연손해금 25,150,684원)" 다음에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20행부터 제16면 제4행까지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 참가인은 위 1의 나.항의 두 번째 표 기재와 같이 위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1. 9. 당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액 합계 4,971,150,550원이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체납액 귀속연도가 2012, 2013년으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 일자인 2016. 8. 12. 이전에 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던 사정, ② 실제 피고 참가인에 대하여 2016. 11.경과 2017. 11.경 각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던 사정, ③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액수가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일인 2016. 8. 12.을 기준으로 합계 32억 원에 근접하는 거액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22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사건 제3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17나2044047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로 C 등4)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3채권의 잔여액 1,946,669,133원에 해당하는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3채권 잔여액 1,946,669,133원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참조).

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 참조).

3)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 32호증, 을 제26,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3채권은 이 사건 조정예 따라 확인된 채권액 4,610,000,000원 중 조정조항 제3항5) 단서6) 에 따라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금액인 1,946,669,133원이 남아 있다(제1심판결도 위 잔여액 1,946,669,133원을 한도로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은 C 등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3채권의 잔여액, 즉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따른 정산금 채무 1,946,669,133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관련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4. 28.자 2022다202313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① 이 사건 제3채권의 잔여액 1,946,669,133원 중 1,472,822,757원은 C 등의 상계 의사표시로 인하여 상계적상일인 2012. 8. 2.로 소급하여 위 잔여액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이 사건 제3채권의 잔여액은 473,846,376원이 되었고, ② 위 473,846,376원의 원리금에 대하여 2019. 4.경 변제(구체적으로는 C 등의 공탁금이 이 사건 제3채권의 잔여액에 충당되는 방식)에 의해서 이 사건 제3채권의 잔여액 전부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채권 잔여액 1,946,669,133원 중 관련 판결에서 상계되었다고 판단한

1,472,822,757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반면[아래 가)항 부분], 관련 판결에서 변제되었다고 판단한 473,846,376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아래 나)항 부분]고 판단된다.

가) 관련 판결에서 상계되었다고 판단한 1,472,822,757원 부분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관련 판결에서 상계되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제3채권의 잔여액 중 1,472,822,757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참가인의 2016. 8. 12.경 채권양도는 피고 참가인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상계 의사표시가 채권양도 전에 있었던 1,432,822,757원 부분

관련 판결에서 상계되었다고 판단한 1,472,822,757원의 대부분을 이루는 금익빌딩 부당이득반환채권, 세무사 비용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합계액인 1,432,822,757원(위 금액에서 변호사 비용 부당이득반환채권인 40,000,000원만을 공제한 금액임)을 자동채권으로 한 C, F의 상계 의사표시는 2015. 12. 10. 피고 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을 제26호증, 30쪽).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3채권의 양도시점인 2016. 8.경을 기준으로 보면, C, F가 그 전인 2015. 12. 10.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효과로 이 사건 제3채권의 잔여액인 1,946,669,133원 중 1,432,822,757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동채권과 대등액에서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참가인이 201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할 무렵 이 사건 제3채권의 잔여액 중 1,432,822,757원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상계 의사표시가 채권양도 후에 있었던 40,000,000원 부분

관련 판결에서 상계되었다고 판단한 1,472,822,757원 중 변호사 비용 부당이득반환채권 4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C의 상계 의사표시는 2017. 11. 20. 피고 참가인에게 도달되었다(을 제26호증, 30쪽). 그러나 위 채권이 2012. 8. 2.경부터 수동채권인 이 사건 제3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던 사정과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더하여 보면,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3채권의 양도시점인 2016. 8.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3채권 중위 40,000,000원

부분에 대한 채권양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①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451조 제2항),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참조). 상계적상에 있는 수동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수동채권의 채무자는 자신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수동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음을 물론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상계적상은 2012. 8. 2.경 있었고, 이 사건 제3채권의 양도는 2016. 8.경 이루어졌으므로, C는 피고 참가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 부당이득반환채권 4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3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이처럼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은 그 채권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 의한 상계 의사표시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② 한편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명령을 받더라도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계의 담보적 기능⁷⁾을 감안하면,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은 그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압류에 우선하여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에 의한 상계 의사표시가 있는 이상,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위와 같은 상계의 소급효는 양 채권 및 이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정산하는 기준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 참조). 그러나 여기에서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 이미 있는 유효한 변제의 사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사실이 없어지지 아니하며, ㉢ 동시이행관계가 소급하여 소멸되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지

아니한다는 등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이 항상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상계의 소급효와는 별개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으로 인해 상계적상에 있던 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소멸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나) 관련 판결에서 변제되었다고 판단한 부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C 등은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할 무렵에는 피고 참가인에게 변제를 한 바가 없고, C가 그 이후인 2019.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8279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6억 원을 변제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을 제26호증, 42쪽).

따라서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제3채권의 잔여액 중 변제되었다고 판단한 473,846,376원 부분은 피고 참가인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에 대한 사해행위는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피고 참가인의 이 사건 제3채권의 양도 전부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 중 1,472,822,757원에 해당하는 채권 부분(관련 판결에서 상계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안 되어서 그 주장이 이유 있지만, 473,846,376원에 해당하는 채권 부분(관련 판결에서 변제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므로 그 주장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22면 제15행의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7행의 "그 귀속연도가 2011년 내지 2014년으로서"를 "그 귀속연도가 2012, 2013년으로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11행부터 제24면 제16행까지의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 1)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 중 473,846,376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고,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 3)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3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인 사실, C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3채권의 잔여액인 473,846,376원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C의 변제공탁에 따라 이 사건 제3채권 중 473,846,376원이 소멸된 것이어서 그 원물반환은 불가능해졌다.
-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가액배상으로 473,846,3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채권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원상회복 청구 부분 포함)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원상회복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원상회복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해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채동수

판사송영승

별지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제3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제3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에는 채권양도일이 2012. 8.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실제로는 채권양도 통지일 무렵인 2016. 8. 12.경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일자를 위와 같이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3) 엄밀히 말하면, "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항목에 포함되는 판단이나,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과 이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어서, 독립된 목차를 잡아 여기에서 판단한다.

4)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제4면에서 C와 F, G, H를 'C 등'으로 약칭하였다.

5) 피고 참가인과 C 등은, C 등이 공유물분할에 따른 정산금으로 피고 참가인에게 4,61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6) 다만 C 등 주장의 피고 참가인에 대한 별지 표[이 사건 조정의 별지에 첨부된 표로, 거기에는 모두 13건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12호증, 6쪽). 개별적으로 13건의 채권을 특정할 필요가 없어, 여기에서 '별지 표'를 따로 적지는 아니한다] 기재 각 채권의 존부가 별개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예한다.

7)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관하여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가지는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대립하는 채권과 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그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때에도 자기의 자동채권에 관하여는 확실하고도 충분한 변제를 받은 것과 같은 이익이 보장된다. 이 점에서 상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라는 설명이 가능하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